

임신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 탐순과 캠의 임신중절 응호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 —

구영모
(서울대 철학과 강사)

I.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논의의 범위를 산모와 태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에 한정시키겠다. 즉, 태아, 산모, 또는 양자에게 보통 이상의 사망 위험이 없는 임신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아울러, 만약 임신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그 임신으로부터 태어날 아기의 일생이 전체적으로 보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들도 우리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¹⁾ 덧붙여,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들도 본 논의로부터 제외시키려 한다. 이렇게 필자가 논의의 영역을 한정하는 데에는 필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의 경우들이 특수한 것들이고 따라서 임신중절의 전형적 경우들이 아닌 것 같다. 물론, 필자가 위의 경우들이 그 자체들로서 이론적 흥미의 대상들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

* 이글의 전반부 초안은 1996년 11월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에서 발표되었다. 필자에게 발표기회를 마련해 준 연구소측에 감사하며, 아울러 발표문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여 값진 비평을 해주신 철학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 이점과 관련하여, 특정한 형태의 척추 이분증(spinal bifida) 또는 극심한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으로 고통받는 태아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전망조차 없으므로 임신중에 유산시켜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들이 임신중절 논쟁의 핵심을 구성하는 주요 경우들과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필자가 보기야, 우리가 명확히 해야만 할 것은 임신중절의 전형적 경우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글에서 필자는 임신중절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논증들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논의해 보고자 하는 주장은, 인간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이 정상적(normal)이고, 무고(innocent)하며, 그리고 위협이 되지 않는(non-threatening) 성인을 죽이는 것과 그 정도와 종류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초점을 맞추려는 논증은, 위 단락에서 고려되었던 바와 같은 제한된 경우들에 있어서, 임신중절이 정상적인 성인으면 누구나 소유하는 생명권과 동등한 태아의 생명권(a right to life)을 침해하기 때문에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한된 경우들에 있어서 임신중절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두 조건들은 각각 임신중절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인 반면, 둘이 합쳐지면 임신중절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첫째로, 태아가 생명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둘째로, 제한된 경우들에 있어서 임신중절이 이 권리를 침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두 조건들을 구분한다고 해서 하나의 명백한 논점이 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임신중절의 도덕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마치 두 조건들 중 오직 첫 번째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이면 모두가 생명권을 소유한다는 전제하에,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첫 번째 조건)에 대하여 논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붓는 것 같다. 한편, 그들은 만약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면 그 권리가 임신중절에 의하여 침해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두 번째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다. 일찍이 탐슨(Judith Jarvis Thomson)은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던 바 있었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태아가 사람임을 확립시키려는 데다가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반면, 거기로부터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으로의 단계를 설명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²⁾

이 글에서 필자는 두 번째 부분에 논의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만약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다면, 제한된 경우들에 있어서의 임신중절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가?

II

탐슨은 그녀의 논문 "A Defense of Abortion"에서 논증하기를, 설령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태아를 임신중절 시키는 것이 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을 폐기 위해 탐슨은, 임신중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그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탐슨은 이러한 보호들의 범위에 관한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을 살펴본다.

탐슨이 고려하는 첫 번째의 견해는, 생명권이 그 권리를 소유한 존재가 생존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임신중절은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이 권리로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을 계속하기 위하여 태아가 필요로 하는 것, 즉 산모가 태아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슨은 생명권이 그러한 소유권리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탐슨은 우리에게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요구한다.

2) Judith Jarvis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The Problem of Abortion*, ed. Joel Feinberg, p.174 필자의 번역

즉, 탐슨 자신이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남 배우 헨리 폰다(Henry Fonda)가 나타나서 그의 시원한 손을 그녀의 펄펄 끊는 이마에 대 주는 것뿐이다. 탐슨이 생각하기에, 헨리 폰다가 그렇게 해서 그녀의 생명을 구해 준다면 그것은 대단히 친절한 일이겠으나, 탐슨 자신은 헨리 폰다에게 그렇게 해 주기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탐슨의 논점은, 생명권이 어떤 것에 대한 권리라고 전제할 때, 생명권은 어떤 존재가 생존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탐슨은, 생명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견해를 고려한다. 그런 견해는 위의 반례에 의해서 논박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생명권에 대한 이 견해에 의하면, 헨리 폰다가 탐슨을 도와주려 오기를 거절한다고 해서 그가 그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즉 그가 그녀를 죽이는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생명권이 태아에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된다. 그런데 탐슨에 의하면 생명권에 대한 이러한 설명도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녀는 다음의 반례를 들면서 그 설명을 비판한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당신은 자신이 의식이 없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한 침대에 등을 맞대고 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의식 없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가 치명적인 콩팥 질환을 갖게 되자 음악 애호 협회는 병원 기록부를 모두 뒤져서 당신만이 그 바이올리니스트와 꼭같은 혈액형의 소유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납치해서 어제 저녁에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순환계를 당신 것에다 연결시켰으며, 이제 당신의 콩팥은 당신 신체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그의 노폐물도 같이 여과해 내게 되었다 하자. 병원 책임자는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음악 애호가 협회에서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말렸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바이올리니스트의 순환계는 당신 것에 접합되어 버렸다. 그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으면 그는 죽는다. 하지만 염려

말라. 9개월만 참으면 된다. 때가 되면 그의 질환은 낳을 것이고 당신은 안전하게 그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³⁾

탐슨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과 바이올리니스트를 연결하는 관을 뽑아 버린다면 당신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그가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헨리 폰다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 당신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슨은 만약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와 당신 자신을 분리시킨다면 당신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탐슨은 생명권에 대한 두 번째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어서, 탐슨은 생명권에 대한 그녀 자신의 설명을 제안한다.

… 생명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게(unjustly)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⁴⁾

만약 탐슨의 제안이 옳고 임신중절이 부당한 죽임을 포함하고 있다면, 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러나, 탐슨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슨은 다음의 인용문을 시작으로 자신의 주장을 응호해 나간다.

… 태아가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 태아를 죽이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 즉 임신중절이 하나의 부당한 죽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⁵⁾

3) 앞의 책, p.174 이정원 번역 “임신 중절을 응호함”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광사, 1983), pp.121-2

4) 앞의 책, p.180 필자의 번역

5) 앞의 책, p.180 필자의 번역

이제 탐슨의 논증들로부터,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아의 생명권이 임신 중절에 의하여 정말로 침해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다시 말해, 이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에로 환원되었다. 아래의 글에서 필자는 우선, 태아가 자신의 생명권에 의거하여 산모의 신체에 머물거나 또는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고 한다. 필자가 보기애, 여기서 탐슨은 만약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에 머물거나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어떤 권리가 있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탐슨이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 가정 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탐슨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태아가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때에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if and only if)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탐슨의 논의에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탐슨에게 있어서, 태아가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임신 중절이 부당하기 위한 충분조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필요조건이기도 한 것 같다. 이어서, 탐슨은 태아에게 (비록 태아가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거나 그 신체를 사용할 어떠한 자동적인 또는 자연적인 권리도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탐슨에 의하면, 태아에게 그런 권리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들 중 적어도 하나가 만족되어야만 한다. 즉, 산모가 태아에게 그녀의 신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든지, 또는 산모가 적절한 방법으로 피임하지 않음으로써 임신의 위험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수하든지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산모가 임신중절을 원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위의 두 조건들 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탐슨은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임신중절은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로부터 임신중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한 탐슨의 지적은 옳은 것 같다. 과연, 우리는 또한

임신중절에 관련된 죽임이 부당한 죽임이라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하지만, 그 죽임이 부당한 죽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탐순의 논변들 중 어느 하나도,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부터 필자는 탐순의 논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탐순의 두 주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첫째로,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거나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은 임신중절이 부당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태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두 주장을 모두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탐순이 두 번째 주장을 평기 위해 사용한 논증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자.

- 1) 만약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거나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자연적 권리이거나 아니면 취득된 권리이어야만 한다.
- 2) 태아에게는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거나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자연적 권리가 없다.
- 3) 그러므로, 만약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거나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야만 한다.
- 4) 태아가 그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은, 태아가 산모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모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는 경우뿐이다.
- 5) 산모가 피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그 산모는 임신에

대해 책임이 있다⁶⁾.

6) 그러므로, 산모가 피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태아는 산모의 신체에 머물거나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7) 그러나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바라는 대부분의 경우 그런 조건들은 거의 만족되지 않는다.

8) 그러므로, 만약 산모가 임신중절을 원한다면,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에 머물거나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위의 논증에 있어서 적어도 두 군데는 취약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5)에서 탐스ون이 임신의 책임에 대해 상술한 조건들이 과연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 전혀 명확하지 않다. 워렌(Mary Anne Warren)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기가 훨씬 더 쉽다는 점을 이미 논증해 놓은 바 있다.

만약 x가 피했을 수도 있었던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리고 그 행위에 관련된 것들을 x가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생명권을 소유한 어떤 인간을 출생시킬 확률이 1 퍼센트이고, 그리고 만약 그 인간이 출생한다면 x가 그를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x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한 그 인간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일이 정말로 발생했을 때 x가 앞서 알고 있었던 바가 그 인간을 계속 살게 하기 위하여 요청될 것이라는 데 대한 도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전혀 명확하지 않다.⁷⁾

6) 만약 어떤 산모가 임신하는 순간 5)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켰으나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 그 산모가 임신중절을 원한다면, 탐스온은 그 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탐스온에게 있어서 산모가 자신의 可能 가능성을 확실히 알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순간(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그녀는 그 임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7) Mary Anne Warren, "On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Abortion", *The Problems of Abortion*, ed. Joel Feinberg. p.107 필자의 번역

물론, 이 주장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친구 부부에게 그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99퍼센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피임 방법을 쓰기를 권한다고 가정하자. 워렌의 주장은, 그럴 경우 만약 당신의 조언에 따르는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시킬 도덕적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와 생각으로는 워렌의 주장이 의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워렌의 주장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완전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언제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 그 결과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진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 효과에 있어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예방조치를 하면, 우리는 흔히 그 책임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그 가능한 결과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수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들에게 사소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는 타인들의 죽음을 야기시키기는 것을 피하는 데에 더욱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워렌의 제안에도 나타나듯이, 성관계에 있어서 임신의 위험이란 도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우리와 예방조치가 거의 완벽하지 않는 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란 우리에게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3)이 명백하지 않다. 다시 말해, 만약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면서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라는 산모의 어떤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취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말이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부여되거나 자발적으로認め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들도 존재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의 순종에 상응하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데 설령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유사하게, 태아와 산모 사이의 특별한 자연적 관계 때문에 태아가 산모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들을 소유한

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산모가 자발적으로 태아에게 그려한 권리들을 부여한 적은 없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단지 산모와 태아 사이의 특별한 자연적 관계로 인해 태아가 산모의 신체내에 머무르며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텁슨은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논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텁슨은 다만, 문제의 신체는 산모의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의 생각에 텁슨은, 산모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태아도 산모의 신체에 대하여 어떤 제한된 권리나마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듯하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왜 반드시 이래야만 되는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 우리의 신체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두 당사자들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공동 권리(joint right)를 소유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더군다나, 태아와 산모 사이의 자연적 관계로 말미암아 태아는 산모의 신체내에 머무르며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소유한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자궁은 태아의 자연적 거처이고, 자궁에는 태아를 길러내는 자연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태아가 산모의 신체내에 머무르며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소유하든지 아니면 태아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든지 하다면, 태아는 이러한 자연적 환경을 점유하고 이용할 어떤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만약 우리의 자연적 거처인 지구가 우주라는 거인의 신체기관의 일부로 판명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거인으로부터 지구에 머무를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지구에 머무를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가?⁸⁾

물론, 위의 논의로부터 태아가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며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8) 이점은 필자가 제 9회 한국 철학자 연합학술대회 (1996년 10월 부산대학교) 윤리학 분과에서 발표되었던 김상득 박사의 논문 “임신중절과 폐미니즘”에 대한 논평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 있다.

만약 필자가 위의 논의로부터 산모의 신체에 대한 태아의 권리를 증명해 내려 시도했었다면, 필자는 자신의 몸 속에 있는 기생충들에게도 태아가 산모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것과 똑같은 종류와 정도의 권리인 인정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의 몸 속에 있는 기생충들에게 필자의 신체는 하나의 자연적인 거처일 뿐만 아니라 그 신체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즉, 기생충들)을 길러내는 자연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의 논의를 통하여 필자가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내에 머물거나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가정하는 탐슨의 생각이 의심스럽고 아마도 말이 안되는 것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설령 탐슨의 논변이 옳다고 치더라도, 임신중절이 부당한 죽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탐슨의 첫 번째 논변은 여전히 논박되어 져야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논증은 태아가 산모의 신체내에 머무르며 그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임신중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가 산모의 신체내에 머무르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불가능한 것으로 되기 위한 충분조건일지언정, 그것이 필요조건이기도 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불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태아는 필연적으로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 어떤 대륙간 여객기 한 대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승무원들이 무임탑승한 승객 한 명을 비행기 화물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이 승객이 다른 탑승객들에게 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가정하자. 이것으로부터 그 여객기의 승무원들이 그 무임탑승객을 (물론, 낙하산도 없이) 태평양 상공에 내던져도 좋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 것은 분명하다. 설령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승객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쨌든 비행기 티켓을 소유한 것이 아닐 데니 까 말이다. 하지만, 만약 비행기 승무원들이 그 무임탑승객을 공중에 내던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비록 태아가 뜻하지 않게 산모의 그녀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태아가 죽여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는다. 요약하면, 태아가 산모의 권리 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산모가 그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 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신중절은 부당 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탐순의 두 번째 변호 또한 적절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에서 나오는 납치된 신장 기증자('당신')와 임신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임산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두 가지 존재한다. 우선, 임신 중절을 원하는 정상적인 임산부들의 경우와는 달리, 오직 신장 기증 자만이 무력의 사용에 의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는 기껏해야 강간에 의한 임신과 유사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이 글의 첫머리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을 논의의 대상들로부터 제외시킨 바 있었다. 아울 러, 필자가 이해하기로 탐순의 논의 역시 두 성인남녀의 자발적인 성 관계에 의하여 야기된 (보통의) 임신에 대한 중절의 도덕성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강간에 의한 임신과 유사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통해서 자신의 논점을 정당화하려는 탐순의 시도는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한편, 두 번째 차이점이 보다 근원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우리는 태아를 죽이게 되는 반면, 만약 바이올리니스트를 당신으로부터 떼어놓는다면 당신은 단지 그를 죽게 내버려두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죽임(killing)과 죽게 내버려 둘(letting die)의 이론적인 구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자의 생각에 문제의 그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⁹⁾.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같

이, 이 글에서의 우리의 논의는 임신중절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몇 가지 특정한 논증들에 국한된다. 다만 죽임과 죽게 방치함이라는 도덕적 구분과 관련하여 여기서 필자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 사이의 구분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탐순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와 보통의 임신중절의 경우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당신의 몸으로부터 떼어놓는다면,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신체에 이미 존재하던 죽음의 과정으로 하여금 그 자연적인 순서를 끊어 나가도록 다만 방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임신중절의 경우 당신은 태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실제로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도록 한다.

만약 우리가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수정하여 그것을 죽게 방치함의 케이스이라기보다 죽임의 케이스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바이올리니스트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 더 이상 명백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정하기를, 만약 당신으로부터 바이올리니스트를 떼어 낸다면 어떤 의료적 이유들 때문에 그가 즉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떼어 내는 과정은 더 이상 단순히 바이올리니스트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letting die)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를 죽이는 것(killing)이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정된 경우가 실제의 임신중절의 경우들과 더욱 흡사한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고쳐지고 나면, 탐순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자 들었던 원래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가 가지는 위력이 상당히 약화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경우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를 곧바로 죽게 만드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는 우리가 이 글에서 이제껏 고려해 온 보통의 임신중절의 경우들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9) 죽임(killing)과 죽게 내버려둠(letting die)의 구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출고, “죽임과 죽게 방치함의 구분에 관하여 - 케이건과 푸트의 논증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1996년 11월 한국사회·윤리학회 발표 논문)를 보라.

IV

이 글의 후반부에서 필자는 탐슨의 제자인 캠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탐슨의 바이올리니스트 예에 대한 우리의 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캠(Frances Kamm)은 죽임과 죽게 방치함 사이의 구분이 가지는 도덕적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탐슨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설명해 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녀의 논의에 따르면, 죽임 자체(*killing per se*)와 죽게 내버려둠 자체(*letting die per se*)는 각기 다른 定義的 속성(definitional property)들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정의적 속성들이란 오직 죽음에만 개념적으로 속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참인 속성들이다. 캠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것들에는 죽임을 의도함, 타인을 방해함, 그리고 죽음을 야기함 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죽게 내버려둠의 정의적 속성이란, 오직 죽게 내버려둠에만 개념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속성들이다. 캠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의 것들이 죽게 내버려둠의 정의적 속성들이다. 즉, 죽게 내버려둠은 위협을 새로이 만들어 내지 않는다. 죽게 되는 사람은 이미 위협에 처해 있다. 그 희생자는 죽게 방치됨으로써 자신을 죽게 방치한 도덕 행위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어떤 것 — 즉, 그 도덕 행위자가 그 희생자의 목숨을 구해 주는 것 — 을 잊게 된다 등등.¹⁰⁾ 캠의 이러한 분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만약 한 도덕 행위자가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定義에 의하여, 그 행위자는 그 피해자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역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만약 한 도덕 행위자가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행위자가 그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캠의 논점은, 실제의 케이스들에서 각기 다른 죽임의 정의

10) Frances Kamm, "Killing and Letting Di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4 (1983), pp. 301-2

적 속성들과 죽게 방치함의 정의적 속성들이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죽임 자체와 죽게 내버려 둠 자체 사이에 구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분이 가지는 도덕적 관련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¹⁾.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캠의 논점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따져 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캠의 분석틀을 빌려 탐슨의 바이올리니스트 예를 시험해 본다면 그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캠은 자신의 분석틀을 근거로 삼아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 같다. “만약 바이올리니스트 예에서 신장 기증자(‘당신’)가 바이올리니스트로 하여금 당신의 신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하고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당신의 몸으로부터 떼어버린다면, 당신은 명백히 그를 살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그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캠은 다음과 같이 탐슨을 변호할 것이다. “보시오. 그런데 그 죽임은 정당화할 수 있는 죽임입니다. 우리는 탐슨에게 있어서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권이란 그 연주자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그 권리은 ‘당신’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함축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바이올리니스트의 예가 하나의 살인(killing) 케이스

11) 여기서 캠은 레이첼스(James Rachels)가 그의 논문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292, No. 2, January, 1975, p. 78)에서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 사이의 구분이 도덕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사악한 삼촌이 어린 조카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를 능동적으로 의사시키는 행위와, 어떤 삼촌이 자신의 부유한 조카가 사고로 육조에 미끌어져서 물에 빠져 죽어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조카의 유산을 탐내어 팔장을 끼고 옆에 서 있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사이에, 도덕적으로 말해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레이첼스의 논증에 응수하여, 캠은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즉, 만약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둠(letting die)에 개념적으로 침입한 어떤 하나의 속성을 하나의 살인 케이스에로 들여온다면(import), 우리가 그러한 케이스를 정당화 하기는 우리가 죽게 방치함의 정의적 속성들 중 어떠한 것도 들여오지 않는 살인 케이스 — 즉, 보통의 살인 케이스 — 를 정당화 하기에 비하여 더 용이하다.

이기는 하지만, 그 케이스에는 죽게 내버려둠(letting die)에만 배타적으로 속하는 하나의 정의적 속성(definitional property) - 피해자가 이미 위협에 처해 있음, 즉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치명적인 신장 질환을 앓고 있음 - 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렇듯 하나의 살인 케이스에 죽게 방치함의 정의적 속성들이 수입될 경우, 그 살인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살인 케이스들보다 더 용이하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캡의 분석틀이 우리로 하여금 탐순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그럴듯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어져야만 할 것 같다. 우선, 여기서 캡은 죽임과 죽게 방치함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은 물론, 죽임을 정당화하기가 죽게 방치함을 정당화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죽임과 죽게 방치함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죽임이 죽게 방치함보다 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은 상호 독립된 것들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푸트(Philippa Foot)가 이미 지적한 바 있었다.

어떤 상황들에서 죽임과 죽게 허용함 둘 중 어느 하나가 허용되고 다른 하나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은, 죽임이 죽게 허용함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¹²⁾

과연, 푸트의 지적대로 캡 식의 논증들은 하나의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의 가정이란,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 가지는 도덕적 중요성은, 다른 것들이 동일한 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사람을 죽게 허용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다음의 반례를 고려해 보자. 어떤 군대가 부상병들을 황

12) Phillipa Foot, “Euthanasia”,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6 (1977), p. 101 필자의 번역

폐한 불모지에다 남겨 두고 후퇴해야만 하는데, 그곳에 남겨진 부상병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곤 오로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것 또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뿐이다.¹³⁾ 이러한 경우, 군대가 그 부상병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의 자비로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그 군대가 부상병들로 하여금 잔인한 적군에 의해서 죽여지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는 자비심을 발휘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캠이 죽게 내버려둠이 죽임에 비하여 정당화에 있어서 더 용이하다는 그녀의 가정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면, 그녀는 증명을 위해 자신의 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푸트는 그러한 증명을 시도하였다.¹⁴⁾) 하지만, 캠의 분석틀 어디에서도 그러한 증명은 발견되지 않는다.¹⁵⁾ 그러므로, 필자의 의견으로는, 캠이 그녀의 논의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한 증명도 없이 문제의 주장을 전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우리는 캠이 죽임의 정의적 속성을 나열함에 있어서 비록 단순하지만 중대한 하나의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간파해야만 한다. 그 실수란, 캠이 살해의도(an intention to kill)를 죽임 자체의 정의적 속성을 중의 하나로서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명백한 실수이다. 왜냐하면, 죽임의 경우들 중에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당 방위(self-defense)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명백히, 비록 정당 방위가 하나의 살인이고 따라서 (캠 식으로) 문제의 도덕 행위자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살인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또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로 한 행인을 치어 죽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 경우, 만약 내가

13) Foot (1977), 앞의 논문, p. 102

14) 푸트의 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각주 8에서 언급된 필자의 글을 참조하라.

15) 그러한 증명에 대한 한 시도가 캠의 최근 논문, "Non-consequentialism, the Person as an End-in-itself, and the Significance of Statu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92)에서 행해졌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 행인을 차로 치어 죽였다면 나는 그를 살해할 의도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 방위나 사고에 의한 살인 등의 경우들이 죽임의 경우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게 내버려둔이라고 흔히 생각되는 경우들¹⁶⁾ 중에는 앞의 두 경우들보다 정당화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애완 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중지하여 그 동물이 굶어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경우 내가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내가 정당 방위나 사고로 타인을 살해한 것을 정당화하기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끝으로, 비록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행위에 의해 타인이 죽게 될 것을 단지 예견하는(foresee) 도덕 행위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공군은 독일의 군수 공장 지대에 대해 전략적 폭격(strategic bombing)을 감행하였다. 그 폭격에 참가했던 조종사들은 당시 그들이 폭격할 군수공장 내부에서 부녀자와 어린이를 비롯한 독일 노동자들(비전투원)이 조업중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비록 조종사들의 행위가 명백한 죽임(killing)이지만, 그들이 군수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⁷⁾

죽임의 한 정의적 속성으로서의 살해의도와 관련하여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캠은 논점을 슬쩍 피하는 식의 응수를 할 것으로

16) 혹자는 다음의 애완동물 餓死의 예가 죽게 방치함의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의 죽임의 경우라는 논변을 시도할련지도 모르겠다. 설령, 그것이 결국에 하나의 죽임의 경우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필자의 논점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죽임의 경우라면, 그것은 정당방위나 사고에 의한 죽임의 경우보다 정당화하기 훨씬 더 어려운 죽임의 경우로 파악되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자의 논점은 애완동물의 예와 같은 원조 중단(withdrawing aids)의 경우를 사실상의 죽임의 경우로 보아야만 하는가, 아니면 죽게 방치함의 경우로 보아야만 하는가라는 논쟁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있지 않다.

17) 동일한 논지에서, 우리는 캠이 나열했던 죽임의 정의적 속성을 중 또 다른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캠이 죽임의 정의적 속성을 중의 하나로서 거론했던 타인을 방해함(interfering with someone) 역시 위와 유사한 이유로 정당 방위 살인이나, 죽임을 단지 예견함과 같은 반례들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로 예상된다. 우리는 캠이 앞에서 죽임 자체와 죽게 방치함 자체의 구분을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의 경우들과 나누어서 고려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캠의 견해에 의하면, 죽임 자체의 정의적 속성이 죽게 방치함의 경우에 수입되어(imported)질 수 있는가 하면, 죽게 방치함 자체의 정의적 속성이 죽임의 경우에 수입되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캠에 의하면, 이러한 수입에 의해서 죽임 자체의 본성이나 죽게 방치함 자체의 본성이 결코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면, 캠의 견해내에서 위의 문제점들 - 정당방위 살인, 사고에 의한 죽임, 그리고 의도하지 않고 단지 예견하기만 하는 죽임 - 이 처리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제기했던 문제점들 사이의 공통점은, 문제의 경우들이 죽임의 경우들이기는 하되 그 경우들에서는 도덕 행위자가 희생자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비록 그 경우들이 죽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경우들은 보통의 살인보다 더 쉽게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마도 캠의 응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비록 문제의 경우들에 죽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경우들에는 죽임 자체보다는 도덕적으로 덜 반대할 만한 것의 정의적 속성들이 수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들에 있어서 도덕 행위자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죽임이지만,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에는 죽임 자체보다 도덕적으로 덜 반대할 만한 것의 정의적 속성(들)이 수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를 정당화하기는 우리가 그러한 속성이 결여된 죽임의 경우를 정당화하기에 비하여 더 쉽다. 유사한 설명이 사고에 의한 죽임의 경우, 그리고 의도하지 않고 단지 예견하기만 하는 죽임의 경우에 대해서도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설명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캠 식의 설명에 따르자면, 정당방위 살인, 사고에 의한 살인, 그리고 의도없이 단지 예견된 살인 등은 한결같이 죽임 자체이기는 하되 그것에 다른 어떤 것의 정의적 속성들이 수입되어 정당화하기 쉽게 된 죽임의 경우들이다. 그러나 캠의 분석틀 내에서, 살해의도란 죽임

자체에 필연적으로 속해야만 하는 정의적 속성들 중의 하나였음을 기억하라. 필자가 제시한 반례들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캠이 그것들을 죽임 자체로서 분석하는 순간, 그녀는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캠에게 있어서 그 반례들이 죽임 자체로 파악되는 한 그것들에는 살해의도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지만, 원래 그 반례들이란 살해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인의도를 죽임 자체의 정의적 속성들 중의 하나로서 파악하는 캠의 견해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캠의 견해가 정의적 속성들의 수입에 의거 죽임 자체와 죽게 내버려둠 자체 사이의 구분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분을 단순히 부인하는 사람들¹⁸⁾은 캠의 입장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캠이 해야 할 일은, 죽임과 죽게 방치함 사이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기초(rationale)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 구분에 관한 하나의 설명방식을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과제이다.

V. 맷음말

위에서 지적된 몇 가지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에 캠의 분석틀은 탐슨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유용한 설명방식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임신중절을 변호하는 탐슨의 논변들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산모가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 내에 머물거나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태아는 그런 권리를 전혀

18)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과주의자들(consequentialists), 특히 공리주의자(utilitarian)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살해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죽임의 경우는 살해의도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었던 경우(레이첼스 예의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다.

가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공동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태아와 산모의 자연적 관계로 말미암아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 내에 머무르며 그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권리가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불가능한 것으로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탐슨의 가정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만약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 도덕적 관련성을 갖는다면, 탐슨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는 죽게 내버려둠에 가까운 반면 실제 임신중절의 경우들은 죽임에 오히려 가까울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탐슨의 예가 가지는 위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고 따라서 탐슨은 자신의 논점을 증명하기 어렵게 된다. 끝으로, 필자는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의 정의적 속성들에 대한 캠의 논의를 확장시켜서 탐슨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이해하는 데 적용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난점들에 관해서 토의하였다.

태아의 생명권이 임신중절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는 탐슨과 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이제까지의 논의들로부터 필자는, 탐슨과 캠의 주장들이 임신중절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지지하고 있다¹⁹⁾는 잊점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지적된 몇 가지 난점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장이 임신중절 반대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9) 탐슨에 의하면 “A Defense of Abortion”에서 그녀가 편 주장들에는 융통성이라는 잊점이 있다고 한다. 탐슨은 그녀의 논증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강간에 의해 임신한 14세 소녀의 임신중절 조차도 금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에 결코 찬성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들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세 계일주 여행을 위해 7 개월된 태아의 중절을 원하는 임산부의 요구에 응해 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의 행위 또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